

1. 개정이유

국선대리인의 신청기간·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확대(안 제2조제2항 각호 삭제)

- 사회·경제적 약자가 심리종결 전까지 심판진행 중에는 언제든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확대

나.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변경)

- 주거급여 수급자 등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대상인 의료급여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확대

다. 신청인의 편의 향상(안 제2조제3항 신설)

- 국선대리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라.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2항 및 별지 서식)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별지서식)에 신청인의 연락처란을 추가하고, 제4조제2항의 인용 오기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를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심판장이 심리종결을 통지하기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으로 한다.

③ 신청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허심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제2호나목·제3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신청인 항목 중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를 “성명(명칭), 연락처,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항목 중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를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항목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의료급여 수급자”를 “수급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앞쪽)

심판번호	
신청인	성명(명칭)
	연락처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본인은 위 사건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심판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를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에 대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2.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소명하는 서류
[] 2.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소명하는 서류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소명하는 서류
[]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임을 소명하는 서류
[]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임을 소명하는 서류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특허심판원	→	선임 여부 결정 특허심판원장	→	통지
---------------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5·18 민주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엽제후유증환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학생(초·중·고 재학생만 해당함)	재학증명서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없음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복무증명서
소기업	-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39세 이하)	- 청년창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만 해당함)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특허 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 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 여 줄 수 있다.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 -----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 급자	1. ----- 제2 조제2호에 따른 ----- --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별지 서식의 국선대리 인 선임 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 심판장이 심리종결 을 통지하기 전까지 ----- ----- ----- -----.
1. 청구인인 경우: 심판을 청구 한 날부터 1개월까지	<삭 제>
2. 피청구인인 경우: 「특허법」 제147조제1항, 「실용신안 법」 제33조, 「디자인보호 법」 제134조제1항 또는 「상 표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답변서 제출 기간	<삭 제>

(「특허법」 제15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 또는 「상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까지

<신 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허심판원장은 직권으로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조(보수) ① (생략)

③ 신청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허심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제2호나목·제3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조(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보수는 해당 사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③ (생략)	② <u>제1항</u>----- ----- -----. ③ (현행과 같음)
--	---